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(안 제7조제3항 등)
- 기계설비의 ‘유지관리’와 ‘성능점검’을 명확하게 구분 규정하여, ‘유지관리’의 경우, 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관리기록을 작성·보존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, ‘성능점검’의 경우, 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록을 작성·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기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 및 제17조 등).
-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(안 제19조).
-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(안 제20조).
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제1항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,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고, 안전·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설치·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(주서본 참조).

첫째, 약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안 제15조제1항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규정하면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약칭하고 이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.

약칭 규정은 문구나 단어의 의미가 나타남과 동시에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,¹⁾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 약칭

1) 「법제기준과 실제(2024년 개정증보판)」 233p.참조

인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장을 의미하는지 혼동될 수 있으므로, 이를 “시장등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²⁾

<수정 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15조(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<u>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</u>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, (이하 생략)	제15조(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 시장·군수·구청장 ”이라 한다)----- -- (이하 생략)	제15조(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 시장등 ”이라 한다)----- -- (이하 생략)

2) 개정안에서는 아래 조항과 같이 현행법상 9개 조항을 포함하여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(약칭)을 총 14번 차례 반복 사용하고 있으므로, 이를 각각 “시장등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* 수정대상 조항: 안 제15조제1항·제2항, 안 제16조의2제2항, 안 제17조제2항·제3항·제4항, 안 제19조제3항·제4항·제6항, 안 제30조제1항제5호·제2항제1호·제2항제2호

둘째, 기계설비 개선명령 위임근거 상향 필요

- 안 제17조제3항은 시장등이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(이하 “개선명령”이라 한다)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, 안 제28조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바, 형벌규정이 국민의 권리·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요소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“대통령령”으로 상향위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고, 기타 경미한 자구를 포함하여 수정함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7조(기계설비 성능점검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	제17조(기계설비 성능점검) ③ 시장등은 ----- ----- ----- 기계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----- ----- 대통령령으로----- ----- -----

<u>수선 등 필요한 조치(이하 “개선명령”이라 한다)를 명할 수 있다.</u>	----- ----- 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

셋째, 안 부칙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- 개정안은 기계설비의 “유지관리”와 “성능점검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,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“관리기록”을,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“점검기록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성능점검 “점검기록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, 이 법 시행 이후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유지관리 “관리기록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<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제2조(<u>성능점검</u>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<u>제17조제2항</u>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<u>성능점검</u>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부 칙 제2조(<u>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</u> 및 <u>성능점검</u>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<u>제16조의2제2항</u> , <u>제17조제2항</u> ----- ----- <u>기계설비 유지관리</u> 및 <u>성능점검</u> 을----- -----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